

가맹계약서



계약서버전	20180411	
가맹점명	축제갈비	점
가맹본부 상호	(주)마루벌	
가맹본부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산면 장산동길 92-23	
사업자등록번호	312-86-10142	
법인등록번호	161511-0109368	
연락처	041-552-9287	
이메일	akfnqjf1234@naver.com	

축제갈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축제갈비 가맹본부”(이하 “갑”이라 칭한다)는 가맹점사업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로 하여금 “갑”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갑”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① “갑”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을”에게 그가 개발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허용된 범위(“갑”이 제작하여 “을”에게 제공 및 “갑”의 승인을 받은 간판, 실사, POP 등)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② “을”은 [축제갈비]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 제 1 항의 “갑”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자체 수정 및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을”은 영업표지와 관련된 일체의 설비 및 물품 등을 파손, 오손, 훼손 등이 없이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원상복구 및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갑”이 부득이한 사유(유효기간의 만료 등)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갑” 및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20 일 이전에 “을”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협조 및 동의하기로 한다. “을”은 영업표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변경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간판, 설비 등은 “갑”의 요청에 따라 교체, 교환, 철거하여야 한다.

제 2 조 (가맹비, 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

- ① “을”은 계약체결 시 **가맹비(700 만원, VAT 별도)**, 교육비(300 만원, VAT 별도)를 “갑”에게 지급한다.
- ② 가맹비는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및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의 대가(가맹비의 90%)이며, 교육비는 개점 전 “갑”이 지정한 교육장에서의 조리/서비스 교육의 대가이다.

제 3 조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갑”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에 따라 “을”이 예치가맹금을 우체국에 예치하도록 안내한다. “갑”은 “을”의 가맹점 영업 개점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예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 4 조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환될 수 있다.

제 5 조 (영업거점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을”의 영업거점지역은 “을”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300m(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기한 경우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로 설정한다. 다만, 해당 영업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 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 함)은 제외하여 설정하고, “을”의 점포가 “특수상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상권”을 “을”의 영업지역으로 한다. 또한, “갑”이 일부 메뉴 및 원부재료로 유통사업을 할 경우 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마트 등의 유통망은 “을”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갑”은 “을”의 영업거점지역 내에 [축제갈비]와 동일한 업종(돼지고기를 구이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에 한해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갱신 시 “을”의 영업거점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하여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이 점포 미보유 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점포의 장소를 선정한다. 점포의 최종의사결정권은 “을”에게 있으며 점포선정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점포선정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③ “을”의 영업성과는 시장상황 또는 “을”의 경영 능력이나 영업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갑”은 “을”의 매출액 및 수입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갑”은 “을”이 제 1 항에서 설정한 영업거점지역 외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을”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갑”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갑”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갑”은 “을”을 배려하여 2 개월 동안 “을”이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잔여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① 인/허가 취득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갑)

(을)

"을"은 점포시설 등 가맹점 개점에 따른 제반 인/허가를 개점일 전까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한다.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1. '메뉴의 표준화'는 고객에게 [축제갈비]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및 신뢰도 제고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위해 "을"은 **영업 중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 품목(별첨 1 또는 정보공개서 V-1 참고)을 "갑"이 정한 바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갑"의 허락 없이 메뉴의 조리레시피를 변경하거나 다른 재료를 첨가하면 아니 된다.
2. 물품주문은 일주일 1 회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발주와 동시에 "갑"에게 결제(미 입금 시 미 출고 원칙)하여야 하고, 택배비용은 착불("을"이 부담)로 한다.
3. "을"이 검사를 태만히 하고 관리상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수량보충을 청구할 수 없다.
4.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공급품의 공급가격은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가 정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가격은 인하 또는 인상될 수 있다.
5. "갑"은 "을"에게 필요 이상의 원/부재료를 주문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을"은 월 평균 소요수량 10% 이상의 재고를 항상 가맹점 내에 비치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등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갑"의 협력업체는 가격, 품질, 납기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원/부재료판매의 제한

"을"은 "갑"의 허락 없이는 메뉴 또는 "갑"이 공급한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의 가맹점, 기타 자영업자 등 "갑"과 계약한 "을"의 점포 외의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인근 [축제갈비]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다.

④ 메뉴판매의 제한

"을"은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을"은 "갑"이 지정한 메뉴를 판매/구성해야 한다. **지정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판매/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갑"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가격결정의 제한

"갑"은 관련 업계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표준가격을 "을"에게 권장하고 있다. "을"이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 ~ :) 및 영업일수(명절을 제외한 연중무휴)를 준수한다. "을"이 연속하여 2 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유니폼 착용

"을" 및 "을"의 종업원은 "갑"이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갑)

(을)

⑧ 광고 및 판촉

1. “갑”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의 시기/종류/비용분담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시행 30일 전 통지한다.
3. 전국 및 지역별 브랜드광고 및 판촉의 비용은 “갑”이 50%, “을”이 50%(전국 또는 지역별 가맹점에 안분)를 부담하고,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의 비용은 “을”이 100% 부담하기로 한다. 브랜드 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갑”이 50%, “을”이 50%(전국 또는 지역별 가맹점에 안분)를 부담하기로 하며, 가맹점모집 광고가 전부일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4. 광고 및 판촉활동은 “갑”은 물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것으로, “을”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을”이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하기 20일 전에 “갑”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을”이 본 항 제 3 호에 의해 광고 및 판촉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갑”은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을”에게 통보하고 “을”이 세부 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7. “을”은 매장 내외부에 “갑”이 제공한 창업모집 관련 안내문 부착에 동의하기로 한다.

⑨ 경업금지

본 계약서 제 10 조 제 1 항 및 2 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을” 및 “을”이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10 조 제 1 항 및 2 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당사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상품공급의 중단

1. “갑”은 본 계약서 제 12 조 제 1 항 각 호의 경우, 7일 전 예고(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 전송 등)한 후 “을”에 대한 물품, 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본 계약서 제 12 조 제 3 항 각 호의 경우, 별도 예고 없이 “을”에 대한 물품, 자재의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⑪ 로열티의 납입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의 로열티 테이블 당 5,000 원(VAT 별도)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통상적인 로열티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서 로열티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⑫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1. “갑”은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갑)

(을)

“을”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는 “갑”이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비용 및 간판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는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비용 및 간판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하기로 한다.

2. 본 항 제 1 호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경우 “갑”은 “을”에게 예상 소요비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3. 점포환경개선공사는 “을”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본 항 제 1 호에 해당되는 “갑”의 부담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다만, 공사비용은 본 항 2 호에서 “갑”이 제시한 예상 소요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갑”은 본 항 제 3 호에 따른 “을”의 비용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갑”의 부담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이 점포환경개선 협의 시 비용지급과 관련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 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5.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갑”의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환수할 수 있다.
6. “갑”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을”의 자발적 의사(임대차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점포이전 포함)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항 제1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㉔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가맹점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소방법, 제조물책임법, 원산지표시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영업설비/집기라 함은 간판,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 초도물품 등 “을”이 가맹점 개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이하 영업설비/집기라 한다)을 통칭한다. “을”의 영업설비/집기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갑” 또는 업체를 지정하여 영업설비/집기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을”은 영업설비/집기(별첨 1 또는 정보공개서 V-1 항목 중 공급업체 요구항목은 제외)를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며 “을”은 3.3m²당(20만원, VAT 별도)의 기획관리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갑”이 정한 표준안에 따라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개점을 보류할 수 있다.
- ⑤ “을”은 영업 중 “갑”이 공급한 영업설비/집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모품을 제외한 영업설비/집기에 대하여 “갑”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수리비의 건적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을”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기로 한다.

⑥ “을”은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점포의 실내장식, 점포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변경할 경우 “갑”의 승인이 필요하다. “을”이 점포 이전을 요청할 경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기로 한다. 만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2 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갑”은 “을” 및 “을”의 종업원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을”의 재교육 또는 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재교육이 필요할 경우 “을”은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② “갑”은 영업 중에 필요 시 신메뉴를 개발하고 해당 교육을 제공한다.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을”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을” 및 “을”의 종업원은 “갑”이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다. 교육 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이수 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갑”은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을”은 필요 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갑”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갑”은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을”의 점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점검을 위하여 매장을 방문한 “갑”의 직원의 점검 및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점검 시 “을”의 점검거부, 자료제출 거부, “갑”의 직원에 대한 폭행, 욕설 등 가해 행위, 점검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등 점검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본 조 제 4 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갑”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가맹점 관리기준 및 경영지도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시정요구를 따라야 한다. “을”이 경영지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⑥ “갑”은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맹점의 경영 합리화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 시 “을”에게 운영매뉴얼을 제공하고, “을”은 이를 준수한다. “을”은 운영매뉴얼이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해 변경,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도 성실히 준수한다. 이 경우 “갑”은 변경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을”은 변경 통지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내용을 준수한다.
- ⑦ “갑”은 가맹점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별 본부(이하 “지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을”은 “갑”과 “지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① “을”은 “갑”이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갑”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을”의 매장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된다.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갑)	(을)
--------------	-----	-----

제 10 조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 ③ “갑”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의 동의를 거친 후 정한다.

제 11 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갱신

- 1.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본 조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3. “갑”은 “을”의 제 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갑”은 제 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을”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 또는 “을”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갑” 또는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나.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다. “을”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계약의 갱신거절 사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갑)	(을)
--------------	-----	-----

제 12 조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① “갑”의 계약해지 사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제 9 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6.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제 18 조제 2 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8. “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9.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10. “을”이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을”의 계약해지 사유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 부재료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즉시해지의 사유

“갑”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제 1 항의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을”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나.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다. “을”이 “갑”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 13 조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① “을”은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축제갈비”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료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갑”과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① 가맹점운영권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을”이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리행사 하게 하거나 위탁,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1 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갑”에게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한다.
- ③ “갑”은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한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양도양수 승인 조건으로 양수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 ④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을”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에게 가맹비(350 만원, VAT 별도), 교육비(300 만원, VAT 별도)를 납입하고 “갑”이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을”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700 만원, VAT 별도), 교육비(300 만원, VAT 별도)를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을”은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 ⑤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약금 및 위약벌에 관한 사항)

- ① “을”이 계약해지·종료 시 제 13 조 제 1 항 내지 2 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10 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제 3 자에게 제 14 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갑”이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해지일 직전 12 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 년 미만 시 2 개월분, 1 년 이상 ~2 년 미만 시 4 개월분, 2 년 이상 시 6 개월분

영업일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정상적인 영업일이 15 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 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한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 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매출액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 ④ “을”이 제 6 조 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최초 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로열티 및 물류마진에 해당되는 금액 - 만약 “갑”으로부터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위약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제 9 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⑥ “을”이 제 6 조 제 2 항(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 1 호를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3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본 조의 경우 “갑”의 지급요청일에 “을”이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을”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⑧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갑”은 “을”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날인보관)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갑)	(을)
--------------	-----	-----

-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상호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관리한다. “갑”은 “을”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계약의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였으며 “을”은 동의하고 이에 서명/날인한다.
- ② “갑”은 가맹사업법 제 11 조제 3 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 년간 보관한다.

제 18 조 (계약 당사자)

- ① 본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임차계약서상의 계약자(자가점포인 경우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만약 위 세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상이한 경우에는 그 다른 계약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의 효력기간 동안 사업장소,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또는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 또는 별도 계약으로 정하며, 특약사항 또는 별도 계약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 또는 별도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④ “갑”이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을”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갑”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9 조 (특약)

별첨1. 필수품목리스트

No.	품명	제조사	공급업체	공급업체 강제/권유
1	목살양념갈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강제
2	수제갈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강제
3	왕갈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강제
4	비빔냉면소스	가맹본부	가맹본부	강제
5	메밀냉면	서울제면	가맹본부	권장
6	동치미	농민식품	가맹본부	권장
7	그린무쌈	으뜸농산	가맹본부	권장
8	명이나물	천지종합식품	가맹본부	권장
9	김치(정담)	(주)정심컴퍼니	가맹본부	권장
10	땅콩가루	한솔푸드	가맹본부	권장
11	후르츠카테일	미드코리아	가맹본부	권장
12	굵은고추가루	유원식품	가맹본부	권장
13	고운고추가루	유원식품	가맹본부	권장
14	참기름(100%)	제이엠푸드	가맹본부	권장
15	향미 참기름	제이엠푸드	가맹본부	권장
16	쌈장	제이엠푸드	가맹본부	권장
17	된장	제이엠푸드	가맹본부	권장
18	해파리	대영상사	가맹본부	권장
19	물수건	천안물수건	가맹본부	권장
20	쌀	남천곡산	가맹본부	권장

*상기 필수품목리스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을"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수 있다.

*"을"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필수품목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가맹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필수품목 사용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기 내역 중 공급업체 권유품목을 지정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갑"이 정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정한 사양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갑"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거점지역>

(Empty box for listing business locations)

상기 영업지역에 한해 [축제갈비]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표시된 범위 내에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 함)은 영업지역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갑)	(을)
--------------	-----	-----

계약기간 등

VAT 별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여부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자문확인서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가맹계약서를 14일 전에 제공받지 않았거나, 가맹거래 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당사자는 숙고기간 14일 준수 후 본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예 □아니오		
계약 체결일	20	년	월 일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년 월 일(2년)
가맹비, 교육비 금액	가맹비 W (금 원 정) 교육비 W (금 원 정)		
가맹비, 교육비 예치일	20	년	월 일
계좌번호			

계약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갑	(주)마루벌 (인)	을	(인)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산면 장산동길 92-23	주 소(거주지)	
		주 소(점포)	
		점포규모	m ²
사업자등록번호	312-86-10142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041-552-9287	전 화 번 호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갑)

(을)

인테리어 의뢰서

본인은 축제갈비 가맹점 인테리어와 관련된 업무를 가맹사업법에 의거 직접 시공이 가능하나 본사 또는 본사의 협력업체에서 시공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 본인 성명: _____ (인)

권유 품목 구입 의뢰서

본인은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내용 중 “1. 물품 구입 및 임차”의 권유품목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 의거 직접 설치 및 구입이 가능하나 본사 또는 본사의 협력업체에서 설치 및 구입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 본인 성명: _____ (인)